



Buildings

소환 번호: 

소환 및 집행 위원회의 명령·민사상 처벌이 적용
집행 기관: NYC 건축부(DEPT OF BUILDINGS)

기관 주소 및 웹사이트: 280 Broadway, New York, NY 10007 www.nyc.gov/buildings

응답자: _____ (이름/독립체, 성)
우편 주소: _____ DOB 라이선스/등록#: _____
휴대폰: 해당 없음

발생일: _____ 목격 시간: _____ 자치구: _____

발생 장소: _____ 블록: _____ 부지(LOT): _____ 상자(BIN): _____

출석하거나 아래 위반 상세내용에 응답해야 합니다. 응답하는 방법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.

청문회 날짜: _____ 장소: _____

행정 재판 및 청문회 사무국(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) _____ (다음 페이지 장소 참조)
모든 통신물 상단의 소환 번호를 참조하십시오.

주의: 출석하거나 이 소환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시는 귀하를 상대로 소환을 결정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. 민사 벌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시 라이선스, 허가 또는 등록에 대한 신청 거부, 중지, 종료 또는 취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시는 법원에서 귀하를 상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위반 상황을 시정하고 시정을 입증하기 위한 집행 위원회의 명령

치유 날짜(가능한 경우 제로 처벌 옵션): _____ 출석해야 합니다: (혐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)
건설 유형: _____ 층수: _____ 관련 작업#: _____
검사 시 점유: _____ 위반 근거: _____

부지 검사 또는 건축부 기록을 기초로 하여 하기 서명자는 귀하가 NYC 행정 코드(Administrative Code), NYC 구역제 결의안(Zoning Resolution)의 하기에 인용된 법률 조항 및/또는 뉴욕시 규칙(Rules of the City of New York) 타이틀(Title) 1 또는 2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했습니다.

목격된 위반 상황

위반 코드	등급	법률 조항	표준 처벌	최대 처벌
<input type="checkbox"/> 재발 조건 가중 I, 1RCNY 102-01(f)에 의하여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중 II 조건, 1 RCNY 102-01(f)에 의하여	<input type="checkbox"/> 불법 전환-등급 1, 28-202.1 & 1 RCNY 102-01에 의하여 타이틀 28 제210조의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 추가적인 일일 벌금도 적용 가능.	<input type="checkbox"/> 28-202.1 & 1 RCNY 102-01에 의하여 추가적인 등급 1 일별 또는 등급 2 월별 벌금이 적용될 수 있음.	<input type="checkbox"/> 발급된 업무 명령 중지: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발급된 명령 취소: _____ 취소#: _____

위반 상세내용:

구제책:

NYC 헌장 제1048조 및 제1049-a조 그리고 뉴욕시 규칙은 NYC 행정 소송 및 청문회 사무국(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, OATH)이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승인합니다. 청문회 선택사항에 대해 본 통지서의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. 시정되지 않은 위반은 추가적인 위반 및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 특정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DOB 민사상 처벌이 행정 코드 제28-213.1조, 제28-219.1조 및 제28-207.2.6조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본 소환의 응답자로 인용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추가적인 민사 벌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건축부 직원인 본인은 상기 기소된 위반사항을 개인적으로 목격 및/또는 부서 기록의 검토를 통해 위반사항의 존재를 확인하였음을 위증죄에 따라 맹세합니다. 여기서 행해진 거짓된 진술은 형사법 제210.45조에 따라 등급 A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발급 경찰관: _____ 서명: _____ 배지#: _____

건축부(The Department of Buildings, DOB)는 귀하가 기술된 위반 또는 본 소환장에 제시된 위반사항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. 본 소환장의 우편 통지서는 "우편 벌금(Mail-in Penalty)"을 포함합니다. 귀하는 청문회 전 언제든지 벌금 전액을 지불함으로써 해당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. 귀하는 또한 시정을 입증해야 합니다. **참고:** 소환장 전면에 귀하가 **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** 기술된 경우, 귀하 또는 공식 대리인은 귀하가 해당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길 원하는 경우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. 청문회 날짜, 시간, 자치구에 대해서는 본 소환장을 참조하십시오.

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우편으로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:

- 우편 벌금 금액으로 "재무 위원(Finance Commissioner)"에게 지불 가능한 수표 또는 우편환을 작성하고 **해당 수표 또는 우편환에 소환 번호를 적으십시오.**
- 본 소환의 청문회 전 10일 이내 본 소환장 사본과 수표 또는 우편환을 다음 주소로 우편 발송하십시오. **OATH, PO Box 2307, Peck Slip Station, New York NY 10272**

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:

- 본 소환장에 기재된 청문회 날짜 전 영업일에 본 소환장과 지불금을 가지고 오전 8시와 오후 3시 30분 사이 OATH 청문회 센터를 방문하십시오. 수표, 우편환, 신용카드도 지불 가능합니다.

해당 혐의를 인정하고 온라인으로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:

- <http://a836-citypay.nyc.gov/citypay/ecb>를 방문하십시오.

시정 입증하기

각각의 소환은 해당 상황을 시정하는 명령과 시정의 수용 가능한 인증을 적시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소환이 기각되지 않는 한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요구됩니다. 시정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양식 및/또는 시정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당국 웹사이트에 <http://www1.nyc.gov/site/buildings/business/resolving-violations-ecb.page>로 방문하십시오. 행정 집행 부서(Administrative Enforcement Unit)에 212-393-2405번으로 연락하십시오.

일부 소환은 치유, 약정 또는 경감의 형식으로 조기 시정의 경우 제로 또는 경감 벌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

- **치유:** 본 소환서의 전면에 "치유 날짜"가 기술된 경우, 귀하는 위반을 인정하고 본 소환서 전면에 기재된 "치유 날짜"까지 DOB에 수용 가능한 시정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DOB가 "치유 날짜"에 또는 그 전에 귀하의 시정 증명서를 승인하는 경우 귀하는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. 귀하의 "치유" 제출서가 "치유 날짜" 이전에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지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고 청문회 후 위반이 확인된 경우 벌금이 부과될 것입니다.
- **약정:** 자격이 있는 경우 귀하는 위반을 인정하고 표준 벌금의 1/2에 해당하는 경감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DOB로부터 청문회 전 받을 수 있습니다. 귀하가 청문회 전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귀하는 첫 번째 정해진 청문회 날짜의 75일 전에 수용 가능한 시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귀하가 수용 가능한 시정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해당하는 경우 표준 또는 가중 벌금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.
- **청문회 시 경감:** 일부 혐의에 대해 귀하가 청문회에 참석하여 위반 상황이 첫 번째 정해진 청문회 날짜까지 시정되었음을 보여준 경우 경감된 벌금을 받을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.

귀하가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, 독립적인 NYC 행정 소송 및 청문회 사무국이 귀하의 사건을 듣고 결정할 것입니다. 해당 벌금을 지불하거나 귀하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귀하의 NYC 라이선스, 등록 또는 허가권이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OATH 청문 센터 - 전화: (844) 628-4692 1-844-OATH-NYC nyc.gov/oath	
• 맨해튼: 66 John St. 10th Floor, New York, NY 10038	• 브루클린: 9 Bond St. 7th Floor, Brooklyn, NY 11201
• 브롱크스: 3030 Third Avenue, Room 250, Bronx, NY 10455	• 퀸즈: 31-00 47th Avenue, 4th Floor Long Island City, NY 11101
• 스테이튼 아일랜드: 350 St. Mark's Place, Main Floor, Staten Island, NY 10301	

귀하의 사건이 "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"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귀하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온라인, 전화, 우편으로 항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- **온라인:** 항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www.nyc.gov/oath을 방문하십시오.
- **전화:** 전화로 청문회 일정을 정하려면 (212) 436-0777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- **우편:** 우편으로 항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고려되길 원하는 모든 문서에 "본 진술서상 본인의 서명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합니다"라고 쓴 사실 진술서에 서명하여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. **OATH Mail Unit, 66 John Street, 9th Floor, New York, NY 10038**

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 항변을 제시하기 위해:

- 귀하 또는 공식 대리인이 청문회 날 본 소환장에 표시된 시간과 장소에 직접 출석할 수 있습니다.